상담학연구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2021, Vol. 22, No. 6, 1-15
https://doi.org/10.15703/kjc.22.6.202112.1

특별호

심리상담 법제화 방향성: 미국의 전문상담사(LPC)와 인증프로그램(CACREP) 사례를 중심으로*

나고은[1] · 허난설[2] · 이상민[3†]

[1]뉴욕시립대 헌터컬리지 상담학과 조교수, [2]순천향대학교 청소년교육상담학과 조교수
[3]고려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본 특별호 원고에서는 미국의 전문상담사(LPC: Licensed Professional Counselor) 제도와 이와 연계된 미국의 심리상담 프로그램들을 인증해주는 상담인증프로그램(CACREP: Council for Accreditation of Counseling and Related Educational Programs) 사례를 살펴보아 우리나라의 심리상담 법제화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미국에서 전문상담사(LPC) 면허를 획득하기 위해서 교육 및 수련과정의 표준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상담인증프로그램(CACREP)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나아가 미국의 CACREP에서 강조하고 있는 직무역량과 우리나라의 심리상담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의 직무역량을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심리상담 분야의 법제화 방안이 현실화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부합하는 상담인증프로그램 구축에 필요한 노력과 전략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 심리상담, 심리상담 법제화, 상담인증프로그램, 전문상담사, 국가직무능력표준

* 본 연구는 2021년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특별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이상민 /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 Tel: 02-3290-2306 / E-mail: leesang@korea.ac.kr

서 론

청소년상담사, 임상심리사 등 공공영역의 심리상담 종사자에 관한 법령은 존재하지만 민간 사설 심리상담센터와 종사자에 관한 근거 법령이 존재하지 않음에 따라 현재 국내의 심리상담 관련 민간자격증은 2800개에 이르고 있으며, 자격증이 돈벌이 장사가 되어 1시간 만에 심리상담사 자격증을 획득할 수 있는 실정이다(보건복지부, 2021). 기본적 윤리 의식도 갖추지 못한 비전문가들이 심리상담센터를 아무런 법적 규제도 없이 개소함에 따라 비윤리적, 위법적 사례가 발생하고, 몇몇이 상업적 수익모델만을 강조하며 심리상담센터를 운영함에 따라 상담 본연의 정신을 훼손하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다(성현모, 이상민, 2021).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2021)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온국민 마음건강 종합대책안'을 발표하며 난립하는 심리상담 관련 자격증을 규제하기 위해 2021년 정책과제로 a) 심리상담 분야 민간 서비스 제공 현황 실태 분석(관련 자격증 현황, 양성 교육 및 보수교육 체계, 업무 범위와 전달체계 등에 대한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서비스 개선 방안 도출), b) 심리상담 분야 자격관리, 심리상담 서비스 활성화 등에 대한 제도적 지원 방안 마련 추진(민간 서비스 제공현황 분석 결과, 관련 단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 자격관리 및 지원체계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여부를 검토)을 하겠다고 하였다.

2021년 9월 심상정 의원실은 심리상담사법 제정에 따른 국회 토론회를 열었으며, 심리상담 관련 단체장(예: 한국가족치료학회, 한국상담심리학회, 한국상담학회, 한국임상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 뿐만 아니라 심리상담 학계와 산업계의 종사자들 모두 새롭게 제정될 심리상담 법안은 전문성과 윤리의식이 담보되어야 한다고 공통된 의견을 전달하였다. 그럼, 전문성과 윤리의식은 어떻게 획득될 수 있는 것일까? 이에 있어 학부 졸업 혹은 대학원 졸업 등에 대한 최종학력에 대한 상이한 의견과 함께 심리상담 수련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상담 실습 시간과 방식에 대한 상이한 의견도 제기되었다. 예를 들어, 한국임상심리학회와 한국심리학회의 경우, 석사 졸업 후, 한 수련기관(예: 병원)에 들어가서 수련하는 방식(예: 3년 수련)을 강조하였으며, 한국상담심리학회와 한국상담학회의 경우, 실습수련은 학회 소속의 수련감독자가 중심이 되어 수련생 개인이 각각의 수련요건(예: 개인상담 횟수, 수퍼비전 횟수 등)에 맞춰 채워가는 방식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심리상담 전문가에 대한 최종학력 이수 표준과 수련방식에서의 차이는 해외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심리상담 전문가 양성에 있어 석사 수준의 표준을 가지고 있는 상담교육 프로그램과 박사 수준의 학력 표준을 가지고 있는 상담심리 프로그램이 존재하며, 각각의 프로그램 이수자들은 상담사(LPC: Licensed Professional Counselor)와 심리사(LP: Licensed Psychologist)로 나누어져 면허 형태의 상이한 자격증을 획득하고 있으나(성현모, 이상민, 2021), 이 두 집단의 직무와 정체성을 분명하게 구분하는 것은 일반인들은 물론 전문가 집단 내에서도 수월한 일이 아니다(MacLeod et al., 2016; Mellin, Hunt, & Nichols, 2011; Nassar-McMillan, & Niles, 2001). 나아가 미국의 경우 심리상담 서비스의 경우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에 최근 미국심리학회 역시 박사과정 중심의 인증제도에 대한 보완을 위해 석사급 인증제도 추진을 진행하고 있다(Commission on Accreditation, 2020).

신윤정과 이지연(2021)은 정부의 온국민 마음건강 종합대책이 전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이 궁극적 목표임을 고려할 때 기본 학력이 박사급인 미

국의 심리사(LP) 제도 외에 기본 학력이 석사급인 상담사(LPC) 지격 제도를 참조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하였다. 나아가 법제화 과정에서 석사급과 박사급 자격증 및 수련과정이 분리되어진 미국과 달리(Jackson & Scheel, 2013) 국내의 주요 심리상담 관련 학회들이 주로 석사학위 소지자들에게 미국의 심리사(LP)에 준하는 1급 전문 심리상담 자격증을 부여해 왔음을 고려할 때 학문의 식민지화를 벗어나 우리나라의 고유한 사회, 문화, 정치, 역사적 맥락에서 법제화의 방향성을 살펴봐야 한다고 하였다(신윤정, 이지연, 2021). 또한, 한국의 경우, 일반인들에게 있어 상담사와 상담심리사는 실상 거의 동일한 의미로 쓰이고 있다는 견해가 주요하기 때문에(Lee et al., 2012), 한국의 상담심리사와 상담사의 자격 제도를 논하는 데 있어, 미국의 심리사(LP) 자격뿐 아니라 상담사(LPC) 자격 제도에 대한 논의가 더욱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상담사(LPC) 자격 제도를 소개하기 위해, 상담사 자격제도와 연결된 상담 및 관련 교육 분야 인증 프로그램(CACREP, Council for the Accreditation of Counseling and Related Education Programs) 제도 역시 소개하고자 한다. 미국의 경우 상담자 양성 및 수련의 질과 관련된 사회적 요구에 대해 대학의 학위 프로그램 인증제를 통해 타개해 온 측면이 있다. 국내 상담계 역시 상담 자격의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심리상담 모법의 제정 뿐 아니라, 상담자 양성에 있어 대학 프로그램들의 교육질 관리가 함께 병행되어 나가야 하기에, 최근 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국가 역량 표준)를 기반으로 한 심리상담 자격 제도와 프로그램 표준 설정을 해나가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다(김인규, 김승완, 2021; 성현모, 이상민, 2021). 이에 본 원고에서는 미국의 면허 형태의 상담사 자격증(LPC)을 중심으로 이와 연결된 상담 및 관련 교육 인증 프로그램(CACREP)의 표준과 준거, 나아가 운영방식을 소개하고자 한다. 또한, CACREP과 국내 상담 관련 프로그램의 근거 표준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NCS와의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심리상담 법제화가 어떤 방향으로 자리매김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함의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미국의 전문상담사 면허(LPC)

미국의 상담사 관리제도는 자격(Certification)과 면허(License) 제도가 있으나, 최종적으로 상담사로서 일하는 데 중요한 것은 면허이며, 이를 관리하는 주체는 주 정부(State Government)이다. 면허는 최소 학위요건, 수련내용(이수과목, 실습시간, 수퍼비전), 그리고 인증기관에 따라 크게 전문상담사(LPC: Licensed Professional Counselor)와 심리사(LP: Licensed Psychologist)로 나뉜다. 이들은 주로 정신건강, 행동, 정서적인 문제가 있는 개인, 집단, 가족, 또는 기관을 대상으로 진단과 심리상담 치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으나, 최종학력 이수 표준과 수련방식에서 차이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중 미국의 전문상담사 면허(LPC)는 최소 석사학위 취득을 전제로 만들어진 독립적 상담 실무를 위한 면허제도이다. 여기서 '독립적 실무(independent practice)'란 학교상담 관련 자격을 획득해야하는 학교상담 분야를 제외한 심리상담 분야 실무를 위한 용어로, 정신건강 센터, 병원, 대학상담센터, 약물 중독 클리닉 등 심리상담 분야 면허를 요구하는 모든 세팅에서의 실무를 의미한다(ACA 자격 제도 관련 안내, n.d.).

주별로 자격 심사 및 인증을 하고 면허가 발급되기 때문에 주마다 부르는 명칭이나 자격 요건에 따라 세부 자격증의 명칭이 조금씩 다르다. 예를 들어, 뉴욕 주에서는 Licensed Mental Health

Counselor, 뉴저지주에서는 Licensed as a Professional Counselor, 메릴랜드 주에서는 Licensed Clinical Professional Counselor라는 명칭을 가진다. 앞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미국은 주별로 자격 심사 및 인증, 관리를 하고 있어 전문상담사(LPC)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표준은 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다음의 항목을 자격 표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우선 국가나 지역에서 인증한 학교에서 석사학위를 획득해야 하는데, 학위과정 중 최소 100시간의 상담 실습과 600시간의 인턴쉽, 이에 대한 1주일에 1.5시간이상의 수퍼비전, 그리고 주에서 정한 필수과목(예, 인간 행동과 발달, 상담기술, 상담윤리)들을 반드시 수강해야 한다. 대부분 주에서 상담 및 관련 교육 인증프로그램(CACREP)에서 인증한 과정을 졸업하였다면 교육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요건은 충족되었다고 인정한다. 일반적으로 석사학위 후에 주에서 요구하는 상담관련 시험이나 윤리 시험을 통과하고 나면, 임시 면허(예: Licensed as an Associate Counselor, Licensed Graduate Professional Counselor 등)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이후 담당 기관의 수퍼비전 하에서 최소 3000시간의 상담 실습 시간(뉴저지와 같은 주는 최소 4500시간 이상, 주에 따라 박사생의 경우 최소 상담실습 시간이 1500시간으로 줄어들기도 함)을 가지고, 실습과 수퍼비전의 표준이 충족되면 LPC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이 때 수퍼비전은 임시 면허 고용 기관에서 필수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것이며, LPC 취득 후에는 상담 관련 기관으로의 정식 취업 및 상담센터 개소가 가능하다. 이후, 전문상담사 면허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 전문 연수(continuing education)를 실시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주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예를 들어 뉴욕주의 경우에는 3년마다 면허 재발급이 이루어지는데, 이때 주정부에서 인정한 기관이나 단체에서 최소 36시간, 메릴랜드 주의 경우에는 2년마다 40시간의 지속적 전문 연수(이 중 적어도 30 시간은 수업, 워크샵, 세미나 등에 참여)를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문상담사(LPC)를 취득하는 과정 중 가장 기본이 되는 학위과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학

표 1

미국 주별 전문상담 면허 기준 예시

	전문상담 면허(LPC) 기준 예시(뉴욕주)
교육 요건	CACREP 인증 프로그램에서 최소 60학점의 석사과정 이수 또는 박사과정 이수, 또는 CACREP 인증 프로그램이 아닐 경우, 지정된 11개의 분야의 과목이수와 600시간 이상의 인턴쉽 증명서를 내야함.
실습 요건	석사 졸업 후 3000 시간의 실습을 이수해야하며, 그 중 내담자와 상담기간이 최소1500시간이 되어야함.
수퍼비전	수퍼바이저는 반드시 뉴욕주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수퍼바이지에게 일주일에 평균 1시간의 수퍼비전을 해 주어야 함. 수퍼바이저는 한 번에 5명 이상의 수퍼바이지를 받을 수 없음.
시험	National Clinical Mental Health Counselor Examination(NCMHCE)를 통과해야함.
관련 세부 자격증	자격증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나 실습시간이 부족하거나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을 경우, 수퍼바이저의 관리 하에 limited permits(제한된 허가증)을 신청할 수 있음.

부 전공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특정 학교나 학과보다는 교과 과목, 상담 실습 및 인턴쉽, 그리고 슈퍼비전을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한 자격 조건으로 제시된다. 미국의 경우 전문상담사의 양성을 석사과정에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각 주에서 인정하는 인증기관의 프로그램을 졸업하였는지가 중요하다. 프로그램의 인증은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교육내용, 상담 실습, 학회 관련 활동, 상담자 역량 개발과 윤리 강령 등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는 곧 상담자의 정체성, 전문성, 윤리의식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인증받은 프로그램의 졸업 여부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Urofsky, 2013). 대부분 주에서는 상담 및 관련 교육 인증프로그램(CACREP)에서 인증한 여러 분야의 석사 프로그램(정신건강 상담, 중독상담, 임상재활 상담, 부부 및 가족 상담 등)을 졸업하였다면 LPC에 필요한 기본 요건을 충족시켰다고 판단하기에 별도의 추가 교육 이수를 요구하지는 않고 있다. 다만, CACREP 인증을 받은 학교 상담 프로그램을 졸업했다면, 각 주에서 요구하는 교사나 학교상담자 관련 자격이나 면허를 획득한 후 학교에서 일을 하게 된다. 만약 본인이 초중고등학교가 아닌 '독립적 임상 실무'를 하기 희망한다면, LPC를 획득하기 위해 심리치료나 심리평가, 상담 계획의 수립, 정서 및 정신건강, 중독 등의 장애를 가진 개개인에 개입 등에 대해 추가 과목을 들어야 LPC자격 획득이 가능하다(ACA 자격 제도 관련 안내, n.d).

상담 및 관련 교육 인증 프로그램(CACREP)

미국의 상담 인증프로그램의 역사를 보면, 1970년대 초까지는 상담자 교육과 슈퍼비전 학회(Association for Counselor Education and Supervision; ACES)에서 개발한 교육 표준을 바탕으로 상담 프로그램의 인증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졌었다. 이후 상담 교육 프로그램의 질의 향상과 정체성 확립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1981년 미국 상담자 교육과 슈퍼비전 학회(ACES)와 미국상담학회(American Counseling Association; ACA)의 공동의 노력 결과로 상담 및 관련 교육 프로그램 인준위원회(CACREP: Council for the Accreditation of Counseling and Related Education Programs)를 발족하였다. CACREP은 상담 교육과정의 기반이 되는 표준안을 마련하고 개정하는 기관으로 석사학위와 박사학위의 프로그램을 인준하고 있으며, 2021년 현재 416개 대학의 900개 이상의 상담 관련 프로그램이 CACREP 인증을 받았다(CACREP, 2021). 상담 관련 석사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 학교 내 조직에 따라 사범대학, 인문대학, 건강보건대학 등에 걸쳐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으며, 학과의 명칭이나 학제 자체보다는 해당 프로그램이 상담자 교육 환경, 교육과정, 상담 실습등의 표준안의 표준에 충족하였는지를 검토한 후 프로그램 인준을 하고 있다.

프로그램의 인준 제도의 가장 큰 목표는 상담자 양성 교육과정의 질 보장과 상담자의 정체성 및 전문성의 확립이라 할 수 있다. CACREP에 따르면 CACREP 표준안(Standards)은 주요한 사회적, 교육적, 그리고 정책적인 변화를 고려해 매 7년 주기로 개정을 하고 있으며, 현재는 2023년 개정안 준비를 위한 공청회 및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CACREP 인증을 받기 위한 과정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프로그램에서 자체 인증 보고서(self-study)를 작성하여 CACREP 표준안에 명시되어 있는 모든 표준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예를 들어 상담사의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교과과정이 잘 구성이 되었는지를 나타내기 위해 모든 교과목의 강의계획서, 재학생의 만족도, 졸업생의 졸업률과 프로그램에 대한 피드

백, 실습 현장의 수퍼바이저들의 피드백 문서 등을 준비한다. 자체 인증 보고서를 제출하고 난 뒤에는 총 3일에 걸쳐 CACREP 현장 방문팀의 현장 방문(site visit)이 이루어진다. 이 때 현장방문 팀은 해당 프로그램과 관련된 다양한 사람들(예, 교수진, 강사진, 재학생, 졸업생, 수퍼바이저, 학장, 총장 등)을 만나 프로그램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발전 방향에 대한 제안을 듣는다. 또한, 학생들의 교육 환경 질 보장을 위해 교실, 상담실, 도서관, 대표적인 실습기관들을 돌아보며, CACREP 표준안을 충족하는지 자세히 살펴본다. CACREP 자체 인증보고서와 현장 방문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CACREP 표준안에 명시되어 있는 모든 표준이 충족되었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8년의 인증 기간을 받고, 단 하나라도 표준에 충족이 되지 못하면 2년의 임시 인증 기간 동안 미충족된 표준을 보완하여 자체 인증 보고서를 다시 제출할 기회를 가지게 되거나, 인증이 취소된다.

가장 최근에 개정된 2016년 CACREP 표준안은 총 6개의 섹션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세부 항목들은 표 2와 같다. 모든 프로그램에 적용되는 154개의 표준이 4개의 섹션으로 나누어져 제시되고 있고, 5번째의 섹션에는 총 8개의 석사 프로그램 특화 분야(specialty area)에 해당하는 표준들이 제시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6번째의 섹션에는 박사과정인 상담자 교육과 수퍼비전(counselor education and supervision) 프로그램의 표준이 제시되어 있다.

각 섹션별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섹션 1은 상담자 수련 환경에 대한 표준으로 크게 학교 환경, 프로그램, 그리고 교수와 교직원에 대한 표준이 제시되어 있다. 우선 모든 석사과정은 최소 60학점 이상으로 이루어지며, 대학은 학생들이 상담자로서의 정체성과 전문성을 향상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대부분의 대학에서 석사학위 이수 과정은 2년(계절학기 포함되는 경우) 또는 3년 과정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교육과정에는 필수 교과목들과 상담 실습, 인턴쉽이 포함되어 있다.

섹션 2에는 모든 석사 및 박사 프로그램에서 필수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전문 지식과 관련된 8개개의 필수 내용 영역들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각 영역별로 그에 해당하는 각 세부 표준이 자세하게 제시되어 있어, 모든 필수과목의 학점을 이수한 학생들의 경우 졸업 이후 전문상담사 면허를 취득하고자 할 때 대부분 주에서 요구하는 교육 요건을 충족시키게 된다. 각 영역 세부 표준은 교육과정 내에 다양한 프로젝트와 활동, 과제를 통해 다루어져야 하며, CACREP 교육과정 표준을 만족시키기 위한 과목 내 여러 활동이나 교육방법은 상담 교육 분야의 주요한 연구 주제이기도 하다.

섹션 3에는 상담 실습, 인턴쉽 및 수퍼비전에 대한 표준이 제시되어 있다. 석사 학위 과정 중 이루어지는 상담 실습(practicum)은 최소 100시간을 최소 10주에 걸쳐 이수해야 하며, 이 중 내담자와의 개인 및 집단 서비스 제공 시간이 최소 40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인턴쉽의 경우, 최소 600시간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 중 240시간은 내담자와 직접적으로 개인 및 집단 상담을 해야 한다. 다음으로 수퍼비전에 대한 표준을 보면, 실습과 인턴쉽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상담 교수, 상담 교수의 지도 하에 있는 박사 과정 학생, 또는 상담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수퍼바이저에게 매주 최소 1시간 이상의 수퍼비전을 받아야 한다. 또한 현장실습 수업의 담당 교수나 강사가 수퍼바이저가 되어 매주 평균 1시간 30분의 집단 수퍼비전을 제공해야 한다. 이렇듯 상담 및 관련 교육 인준을 받은 프로그램들은 상담실습 및 인턴쉽 과정을 통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수퍼비전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상담자들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표 2

2016 미국상담교육과정 인증 기준(CACREP)의 구성

섹션 및 타이틀	세부항목	
섹션 1: 교육환경	ㅣ 학교시설 ㅣ 프로그램 ㅣ 교수와 교직원	모든 프로그램의 공통 표준
섹션 2: 상담자 정체성(기본 교육과정)	ㅣ 기초 표준 ㅣ 필수 내용 영역(8개 영역) 1. 상담의 전문성과 윤리 2. 사회와 문화의 다양성 3. 인간의 성장과 발달 4. 진로 발달 5. 상담과 조력 관계 6. 집단상담 및 집단 작업 7. 심리 평가와 측정 8. 연구와 프로그램 평가	
섹션 3: 상담 실습	ㅣ 실습 ㅣ 인턴쉽 ㅣ 슈퍼바이저 자격요건	
섹션 4: 프로그램 평가	ㅣ 프로그램 평가 ㅣ 학생평가 ㅣ 교수 및 수퍼바이저 평가	
섹션 5: 석사 프로그램 특화 분야 교육과정	ㅣ 중독상담 ㅣ 진로 상담 ㅣ 정신건강 상담 ㅣ 임상재활상담 ㅣ 대학상담 ㅣ 가족상담 ㅣ 학교상담 ㅣ 재활상담	석사 프로그램 특화 분야에만 해당하는 교육과정 표준
섹션 6: 상담자 교육 및 수퍼비전 박사프로그램	ㅣ 박사과정 교육환경 ㅣ 박사과정 직업 정체성 ㅣ 실습과 인턴쉽	박사과정에만 해당하는 표준

표 2
2016 미국상담교육과정 인증 기준(CACREP)의 구성 *(계속)*

CACREP 섹션 2 기본 교육과정 세부 표준 예시 (섹션 2의 8개 영역 중 5. 상담 및 조력 관계 표준만)
F. 아래의 8개 핵심 영역에 *모든* 입문 수준(석사) 상담 교육 졸업자들에게 요구되는 기초적 지식을 대표한다. 그러므로 상담자 교육 프로그램들은 각각의 표준들이 교육과정 내에서 어떻게 가르쳐지는 지 반드시 문서화 해야 한다.
5. 상담 및 조력 관계
a. 상담의 이론과 모델들
b. 내담자 사례개념화를 위한 체계적 접근
c. 자문을 실시하기 위한 이론, 모델, 전략들
d. 대면 또는 비대면 관계를 수립, 유지하기 위한 윤리적이고 문화적으로 적절한 전략들
e. 상담 과정에 있어 테크놀로지의 영향
f. 상담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상담자 개인의 특성과 행동
g. 필수적인 면접, 상담, 사례개념화 기술들
h. 발달적으로 적절한 상담 처치 및 개입 계획
I. 측정할만한 상담 성과의 구성
j. 근거기반 상담 전략과 예방과 개입을 위한 테크닉
k. 내담자가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들을 이해하고 접근하도록 돕는 전략들
l. 자살 예방 모델 및 전략
m. 심리적 응급 처리와 같은 위기개입, 트라우마이해 기반 서비스, 지역사회기반 서비스
n. 수련상담자의 개인적 상담 모델 구성

향상시키도록 설계되어 있다.

섹션 4는 프로그램 평가에 대한 표준으로 학생들의 상담 전문지식, 상담기술, 그리고 수련상담자가 지녀야 할 자질에 대한 평가와 함께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질을 보장과 향상을 위한 표준을 제시하고 있다. 2016년 개정안에는 상담자 교육의 질 보장과 체계적인 교육평가를 위해 특히 이 섹션 4의 표준들이 강화된 바 있다. 석박사 프로그램들이 CACREP 인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년 프로그램 평가 내용, 졸업생의 수, 상담 자격증 시험 합격률, 졸업률, 취업률의 정보를 학과의 웹사이트에 올려야 하며, 학생, 교수, 대학 본부, 수퍼바이저 등에게 이러한 정보가 웹사이트에 업데이트 되었다는 걸 알려야 한다. 또한, 학생들의 상담 관련 전문지식과 기술을 평가하기 위해 섹션 2에서 제시된 8개의 핵심 분야 교육과정 표준에 대한 모든 학생의 주요성과지표(key performance indicator)와 상담자로서의 윤리성과 자질을 측정하는 주요자질지표(key dispositional indicator)를 만들어 입학부터 졸업을 하는 시점까지 체계적으로 측정하여 분석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섹션 5에는 석사 과정 특화 분야별로 각 프로그램에서 추가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교육과정 내용 표준이, 섹션 6에는 박사과정 프로그램의 환경, 교육과정 내용 표준, 실습 및 인턴쉽, 수퍼비전 등에 대한 표준들이 제시되어 있다.

CACREP과 NCS의 비교

CACREP 인증 제도는 고등 교육의 책무성(accountability)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상담 교육계가 자체적인 노력을 통해 응답해 낸 결과물로 볼 수 있다(Brott, 2006; Urofsky & Bobby, 2012). 미국 교육계에서 교육과정 인증은 고등 교육 질 보장을 위한 우선적 수단으로 언급되며, CACREP 역시 전문성을 갖춘 상담자 양성에 대한 상담 교육 프로그램들의 책임과 관련해 수립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CACREP의 인증 표준들은 크게 프로그램의 인적, 물리적 환경에 대한 기본적 요건을 설정하는 의미, 학생 성과와 연동된 프로그램 평가 체제 구축의 의미, 학생들이 프로그램에서 제공한 학습 경험들을 통해 보여야 할 학습 성과 표준들을 규정하는 의미가 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국의 상담 프로그램 인준 표준인 CACREP은 인증 표준 중 섹션 1과 3을 제외한 나머지 섹션들은 학생들이 교육과정 내에서 어떠한 교육 경험을 해야 하는 지에 대한 표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 때, CACREP의 교육 경험과 관련된 표준은 어떠한 교과목을 개설해야 하는 지가 아닌, 전체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갖추어야 할 지식, 기술, 태도 등을 포함한 학생 학습 성과(Student Learning Outcome; SLO)로서 규정되어 있다. 학생의 학습 성과는 학생 개개인의 과제 수행 결과일 뿐 아니라, 프로그램의 수행 성과에 대한 지표로도 해석된다. 다시 말해, CACREP 교육과정의 인증제도에서 '표준'의 의미는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받은 학생들은 어떠한 학습 성과를 보여주어야 하는 지에 대한 표준이며, 학습 성과 표준의 만족은 해당 분야 실무를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전문가가 배출시키기 위한 준비라는 점에서 역량 중심 교육과도 관련이 깊다(Swank & Lambie, 2012).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 상담계 역시 상담사 자격의 문제점을 상담자 양성과 수련의 질관리 시스템과 연동되어 해결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심리상담 모법 제정 뿐 아니라, 상담자 양성에 있어 대학 프로그램들의 교육질 관리가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이에 국내 모든 국가 자격 제도가 반드시 기반을 두어야 하는 NCS(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국가 역량 표준) 자체를 대학 학위 프로그램의 기반으로 해나가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다(김인규, 김승완, 2021; 성현모, 이상민, 2021). NCS는 산업 현장에서 실무 수행에 요구되는 지식과 기술 및 태도를 국가 수준에서 표준화한 것으로, 직업군을 직무에 따라 대분류(24개)-> 중분류(80개)-> 소분류(2578개)-> 세분류(1022개)의 체계로 분류하고 있다. 세분류 아래에는 해당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능력 단위들이 제시되어 있다. 능력 단위는 능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수행의 준거, 이를 위해 갖추어야 할 지식, 기술, 태도 및 능력 적용 범위 및 작업 상황, 평가 지침, 직업 기초 능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능력 단위에서는 1에서 8에 이르는 수준이 부여되어 있는데, 이는 해당 능력이 어떤 정도의 전문성 수준인지를 의미한다.

현재 상담 분야는 07. 사회복지 및 종교(대분류)-02. 상담(중분류) 아래 3개의 세분류, -1. 직업상담 서비스, 2. 청소년 지도, 3. 심리상담이 제시되어 있다. 이 중 3. 심리 상담자의 능력 단위는 2021년 기존 11개의 능력 단위를 일부 수정하고, 새롭게 10개의 능력 단위를 신설하였다. 2021년 심리상담 세분류에 제시된 21개의 능력 단위의 그 수준은 표 3과 같다. 각 능력 단위는 수준 3 ~ 수준 8에 걸쳐 수준에 부여되어 있다. 4. '개인 심리치료 상담' 능력 단위에 부여된 6 수준은 '독립적인 권한 내에서 해당 분야의 이론 및 지식을 자유롭게 활용하고, 일반적인 숙련으로 다양한 과

표 3

2021년도 개정 심리상담 세분류 NCS 표준 일부 예시

2021년 개정 심리상담 세분류 능력 단위	
1. 심리상담 안내(3)	11. 심리상담 홍보(3)
2. 접수상담(6)	12. 수련상담자 교육(8)
3. 내담자 의뢰, 연계(4)	13. 심리상담 홍보(3)
4. 개인심리치료상담(6)	14. 심리상담 사례개념화(6)
5. 집단상담 운영(6)	15. 집단상담 개발(7)
6. 관계자 상담(6)	16. 부부가족상담(6)
7. 위기상담(7)	17. 재난극복상담(6)
8. 심리상담 교육(5)	18. 트라우마 상담(7)
9. 심리검사 활용(5)	19. 심리상담 수퍼비전(8)
10. 심리상담 정보 관리(4)	20. 심리상담 기획행정(4)
11. 심리상담 자문(6)	21. 비대면 심리상담(5)

NCS세부 표준 예시
(심리상담 세분류의 21개 능력 단위 중 '심리상담 사례개념화 능력' 단위의
일부 수행 표준만 나열함

- 능력단위 명칭: 심리상담 사례개념화
- 능력단위 정의: 심리상담 사례개념화란 내담자의 주호소문제를 상담이론을 기반으로 내담자의 사고, 감정,행동 이면의 유발요인 및 유지시키는 과정을 통합적으로 이해하여 심리상담의 임상목표와 전략을 수립하는 능력을 말한다.
- 능력단위 요소

1. 내담자 주 호소문제 개념화 하기
2. 상담목표 설정하기
3. 상담 전략 및 방법 수립하기

- 능력단위 요소별 수행 표준

1. 내담자 주 호소문제 개념화 하기의 수행 표준 예시
   1.1 내담자의 주호소문제를 이론적 기반에 근거하여 통합적으로 기술할 수 있다.
   1.2 내담자의 주호소문제를 일으키는 유발요인과 유지시키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1.3 내담자의 주호소 문제를 상담자가 진행하고자 하는 상담이론에 근거하여 설명할 수 있다.
   1.4 내담자의 주호소 문제를 사례개념화한 것을 구조화시켜 상담기록지에 기술할 수 있다.

업을 수행하고, 타인에게 해당 분야의 지식 및 노하우를 전달할 수 있는 수준' 정도의 역량을 가져야 한다고 되어 있다(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2017). 19. 심리상담 수퍼비전 능력 단위에 부여되어 있는 8수준은 '해당 분야에 대한 최고도의 이론 및 지식을 활용하여 새로운 이론을 창조할 수 있고, 최고도의 숙련으로 광범위한 기술적 작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조직 및 업무 전반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부여된 수준'으로 규정된다(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2017).

NCS를 한국 심리상담 자격과 연계될 교육과정 표준으로 고려해 본다면, 이를 CACREP의 섹션 2의 표준들과 비교해 볼 수 있다. NCS는 표 3에 나열된 각 능력 단위를 해당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과정적 요소로 다시 구분하고, 그 요소과 관련된 수행 표준, 수행을 위한 지식, 기술, 태도, 고려사항 및 평가 들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 CACREP와 NCS의 표준 제시 방식들을 비교하기 위해, 표 4에 일부 세부 표준을 선택하여 나열하였다. CACREP의 표준은 상담 분야 내에서 꾸준히 강조되어 오던 교육 내용들을 보다 평가 가능한 언어로 바꾸어 학습 성과에 대한 표준의 개념으로 진술했다는 특징이 있다. 이와는 다르게 NCS는 현장에서 필요한 직무를 기본 단위로 하여 해당 직무의 성공적 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들을 관찰과 평가를 할 수 있는 언어로 서술했다는 특징이 있다. CACREP의 표준은 상담 분야 프로그램들의 기존 교과목 틀을 크게 바꾸지 않더라도 적용 가능한 명시적 학습 성과 표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기존 프로그램들의 정체성을 그대로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현장 실무와의 연계성은 다소 떨어질 수 있다.

NCS 표준의 경우, 현장에서 관찰 가능한 직무 능력 단위를 상위 수준으로 두고, 그 직무에 대한 수행 기준, 지식, 기술, 태도를 나열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담 프로그램의 기존 교과목이나 교육 내용 중 NCS 표준과는 매칭되지 않는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다. 예컨대, CACREP에서는 대학의 관점에서 핵심 표준 중 영역 8을 '연구와 프로그램 평가'로 이름 짓고, 관련 표준들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 NCS는 현장의 관점에서 '심리상담 정보 관리'라는 능력 단위의 '상담 통계 분석'과 '상담 통계 분석결과 활용하기'라는 능력 구성 요소만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NCS는 관찰 가능한 직무 능력 단위마다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를 나열함으로 인해, 몇 개의 능력 단위를 한 교과목에서 가르친다고 한다면 교수-학습 되어야 할 지식, 태도, 기술 기준들의 중복이 나타날 수 있다. 또한, 관찰가능한 직무 수행과는 연결 짓기 힘드나, 상담자에게 매우 중요한 교육 요소, 예컨대, 상담자 윤리나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같이 인식과 태도 측면이 충분히 부각되지 못한다는 한계도 있다. 마지막으로 CACREP의 경우 석사 프로그램을 학교상담,중독 상담, 대학 상담, 정신건강 상담 등 8가지 특화 분야(표2, 섹션3)로 나누어 추가적인 내용 표준을 구분해서 제시하고 있는 반면, NCS는 21개의 직무 능력단위 모듈 형식으로 구분(표3)하고 있다. 이는 향후 NCS를 한국형 상담 프로그램 인증 기준의 내용 기초로 활용 시 석사 프로그램의 기본과 특화 내용 수준을 능력단위 조합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될 수 있다.

법제화 과정에의 함의점

본 원고에서는 석사급 수준의 미국의 전문상담사(LPC) 자격과 이와 연계되어있는 프로그램 인증 제도인 CACREP을 살펴본 후, 미국의 CACREP 표준과 우리나라의 NCS간의 직무역량을 상호 비교,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우리는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향후 민간 심리상담 분야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심리상담 관련 모법안을 추진하는 방향을 중심으로 심리상담센터 개소를 할 수 있는 심리상담 전문가는 자격을 지니는 것이 바람직한지, 그 자격 표준으로 중심으로 심리상담사의 개념, 범위, 역할 등을 정의하여 규제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현재 민간 심리상담소는 심리상담 관련 국가 자격증이 없이 누구나가 개소할 수 있는 신고제

형태이다. 이러한 신고제 헝태의 문제점을 고려할 때 미국과 같이 상담사 자격(LPC)을 취득한 자만이 민간 사설 심리상담소를 개소할 수 있는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심상정 의원실에서 제시한 심리상담사법안과 같이 심리상담센터 등록이 포함된 심리상담 모법안을 추진되어야 한다. 미국의 경우에도, CACREP 인증 프로그램을 나왔다고 해서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상담사(LPC) 자격증을 바로 취득할 수 없으며, 상담사(LPC) 자격증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석사학위 취득 후 일정의 필기시험을 통과한 후, 주정부에서 설정한 기준에 부합한 임시 면허를 가지고 기관에 들어가 수련 경험과 수퍼비전 시수를 이수한 후, 최종적으로 면접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심리상담사 모법안이 통과된다면 미국 LPC 수준의 심리상담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은 심리상담센터를 개소할 수 없게 될 것이며, 심리상담사 자격증이 있다 하더라도 윤리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예: 비밀보장의 의무)를 위반했을 때 법적 제재 및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 CACREP과 비슷하게 우리나라의 NCS 역시 심리상담의 개념, 범위, 역할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학습모듈(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자격기본법 제3조에 따르면 국가 및 민간자격관리자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부합되도록 자격제도를 관리·운영해야 한다. 앞서 보여주었듯이 우리나라의 심리상담 NCS의 능력단위는 총 21개로 나누어져 있으며, 이에 따라 학습모듈(교육과정)이 현재 개발 중이다. 다만, 미국의 CACREP과 비교할 때, NCS는 그 태동이 프로그램 인증 기준이 아닌 자격 제도와 연관되어 있는 역량 기반 수행 표준이라는 점에서 프로그램 인증 기준이 갖추어야 할 몇 가지 측면이 부재하다. 예컨대, CACREP의 섹션 1에 규정된 교육 환경의 인적, 물적 조건에 대한 표준, 섹션 3에 규정된 실습 및 수퍼비전 시간 및 수퍼바이저-학생 비율에 대한 독립적인 표준, 섹션 4에 규정된 프로그램 평가에 대한 표준 등은 NCS에서는 고려할 수 없다. CACREP이 섹션 1이나 2에 대한 공정한 심사를 위한 엄청난 자원을 들여 현장 방문팀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고려해 보면, 이는 향후 NCS기반 한국형 상담 프로그램 인증 표준을 세울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점으로 보인다. 또한 CACREP과 NCS를 프로그램을 통해 다루어져야 할 능력이나 역량을 다루는 표준이라는 제한된 측면에서만 비교해 보더라도, NCS는 현장 실무에 필요한 역량들을 관찰 가능한 행동 용어로 풀어서 기술하다 보니, 상담자 윤리나 다양성에 대한 고려, 인간관 등 상담자 정체성 형성에 필요한 인식과 태도 수준의 학습 요소들이 부각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으므로 이는 향후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보인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NCS는 프로그램을 통해 실제 직무를 해낼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한다는 역량 기반 교육적 관점을 가장 잘 드러내는 표준이라는 점에서 대중의 교육 책무성 요구를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교육 표준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국가 자격과 연계된 NCS가 한국형 상담 프로그램 인증 표준의 내용적 기초가 되어야 하는 것은 자명한 상황에서, 상담학계가 이를 어떠한 방식으로 발전시켜 한국형 상담 프로그램 인증 표준을 구축해 나갈 것인지가 보다 중요한 초점이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상담과 관련된 여러 정체성의 다양한 학부, 석박사 프로그램들이 존재하는 한국의 상황에서 상담 프로그램 인증 표준의 교육내용 표준에 대해서만큼은 모듈형의 NCS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 여러 불필요한 논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NCS 기반 한국형 상담 프로그램 인증 표준이 구축된 이후에는 향후 제정될 심리상담사 모법

혹은 현재 심리상담 서비스를 규정한 101개의 개별 법령(예: 세월호피해지원법)의 시행령 혹은 시행규칙에 민간 심리상담센터와 센터의 인력에 대한 개념, 범위, 역할, 그리고 자격표준을 심리상담 NCS에 기초하여 명시해야 할 것이다(성현모, 이상민, 2021). 나아가 현재 심리상담사 법령 추진 과정에서 상이한 이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자격요건에 대한 문제를 잠재우기 위해서는 심리상담 관련 대학(원) 교육과정의 적합성을 NCS 학습모듈 중심으로 평가하고 인증해주는 단체(예: 심리상담 교육과정 인증위원회)를 구성하여 해결해야 할 것이다. 상담사(LPC), 심리사(LP), 부부가족상담사(LMFT) 등으로 나눠서 상이한 프로그램 인증위원회가 구성된 미국과는 다르게 우리나라는 심리상담 유관기관들이 고루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면, NCS 학습모듈이라는 확고한 국가의 자격표준 하에 전문인력의 요건에 대한 합의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이는 현재까지 개설되어있는 수많은 심리상담 관련 전공/학과들의 운영과 관리에 대한 표준점이 되어줌으로써 심리상담 전문인력의 양성에 대한 일관성, 전문성에 대한 신뢰성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성현모, 이상민, 2021).

궁극적으로는 심리상담 종사자들이 합의할 수 있는 자격 표준을 갖춘 법률안이 마련되어 우리나라의 사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어 공공선(Public Good)이 이루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해외의 사례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비판적인 시각에서 우리나라에 적합한 법제화 방향성을 모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기존의 연구자들(예: 이상민 외, 2019; 이상민, 2020; 성현모, 이상민, 2021)은 이미 무수한 심리상담 민간자격증과 심리상담센터가 만들어진 상황에서 이들 자격증과 심리상담센터들은 앞으로 어떻게 통합해야 하는지, 우후죽순 생겨난 심리상담 관련 학과와 대학원에 적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교육과정을 어떻게 설계할 수 있을지 등에 대해 단순히 장밋빛 전망만을 하기 보다는 현실에 기초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본 연구는 이에 대해서 미국의 상담사(LPC)와 상담 및 교육 관련 인증프로그램(CACREP)을 살펴보아 우리나라에 적합한 자격표준과 표준화된 교육과정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가 계속되어 우리나라의 심리상담 전문가 양성과정과 교육, 수련, 훈련과정이 법 테두리 내에서 더 체계화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2017).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훈련기준 활용 훈련과정편성 매뉴얼. https://www.ncs.go.kr/vt/guide/ncsTrainGuide.pdf.

김인규, 김승완 (2021). NCS 기반 상담 자격 법제화 연구-FGI 방법을 활용하여. 교육종합연구, 19(2), 37-58.

보건복지부 (2021). 온국민 마음건강 종합대책-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

성현모, 이상민 (2021). 민간 심리상담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상담학연구, 22(4), 1-10.

신윤정, 이지연 (2021). 심리상담서비스 국가 자격 관리 방안 제언: 미국 사례를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22(4), 39-49.

American Counseling Association (n.d.). Licensure requirements for professional counselors, a state by state report. Retrieved from https://www.counseling.org/knowledge-center/licensure-requirements/state-professional-counselor-licensure-b

oards.

Brott, P. E. (2006). Counselor education accountability: Training the effective professional school counselor. *Professional School Counseling, 10*(2), 179-188.

Commission on Accreditation (2020, 03). *Master's level accreditation: A status update from the Master's accreditation work group*. Retrieved from https://www.apa.org/ed/accreditation/newsletter/2020/03/masters-accreditation.

Goodyear, R. K. (2000). An unwarranted escalation of counselor counseling psychologist professional conflict: Comments on Weinrach, Lustig, Chan, and Thoma (1998).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78*(1), 103-106.

Hughes, T. L., & Diaz-Granados, J. (2018). Master's summit: Quality assurance and accreditation. *Professional Psychology: Research and Practice, 49*(5-6), 306-310.

Jackson, M. A., & Scheel, M. J. (2013). Quality of master's education: A concern for counseling psychology?. *The Counseling Psychologist, 41*(5), 669-699.

Lee, S. M., Suh, S., Yang, E., & Jang, Y. J. (2012). History, current status, and future prospects of counseling in South Korea.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90*(4), 494-499.

MacLeod, B. P., McMullen, J. W., Teague-Palmieri, E. B., & Veach, L. J. (2016). What does the public know about professional counseling? A study of public knowledge and perception of professional counselors. *Journal of Counselor Leadership and Advocacy, 3*(2), 95-110.

Mellin, E. A., Hunt, B., & Nichols, L. M. (2011). Counselor professional identity: Findings and implications for counseling and interprofessional collaboration.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89*(2), 140-147.

Nassar-McMillan, S. C., & Niles, S. G. (2011). D*eveloping your identity as a professional counselo*r. Belmont, CA:Brooks/Cole.

Swank, J. M., Lambie, G. W., & Witta, E. L. (2012). An exploratory investigation of the Counseling Competencies Scale: A measure of counseling skills, dispositions, and behaviors. *Counselor Education and Supervision, 51*(3), 189-206.

Thompson, M. F. (2020). Subdoctoral practitioners in psychology: Implications for master's-level psychologists. *Practice Innovations, 5*(2), 105-113.

Urofsky, R. I. (2013). The council for accreditation of counseling and related educational programs: Promoting quality in counselor education.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91(*1), 6-14.

Urofsky, R. I., & Bobby, C. L. (2012). The evolution of a student learning outcomes focus in the CACREP standards in relation to accountability in higher education. *Counseling Outcome Research and Evaluation, 3*(2), 63-72.

원고 접수일 : 2021. 10. 28.
수정원고 접수일 : 2021. 12. 09.
게재 결정일 : 2021. 12. 11.

상담학연구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2021, Vol. 22, No. 6, 1-15

Exploring the Possibility of Legalization of Counseling: Focus on Licensing Rules of Professional Counselors and Counseling Program Accreditation System in the U.S.

Goeun Na[1] · Nanseol Heo[2] · Sangmin Lee[3]

[1]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Educational Foundations & Counseling Programs, Hunter College, The City University of New York

[2]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Youth Education and Counseling, Soonchunhyang University

[3]Professor, Department of Education, Korea University

This article examined the Licensed Professional Counselor (LPC) and the Council for Accreditation of Counseling and Related Educational Programs (CACREP), which provides accreditation for counseling programs in the United States to suggest the directions for psychological counseling legislation of Korea. We specifically reviewed the educational and experience requirements for applying the LPC in line with the standards for CACREP-accredited counseling programs. Furthermore, we compared and analyzed the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NCS) for the category of counseling and the counselors' competencies emphasized in the CACREP standards. Finally, we contemplated some strategies for formulating standards on high-quality education and systemic training for counseling professionals based on the unique socio-cultural characteristics of Korea to establish the legislation that is currently being discussed.

Key words : Counseling, Legalization of Counseling, Counseling Program Accreditation System, Professional Counselor, NCS